

# 단체협약 확장제도 - 해외 사례연구의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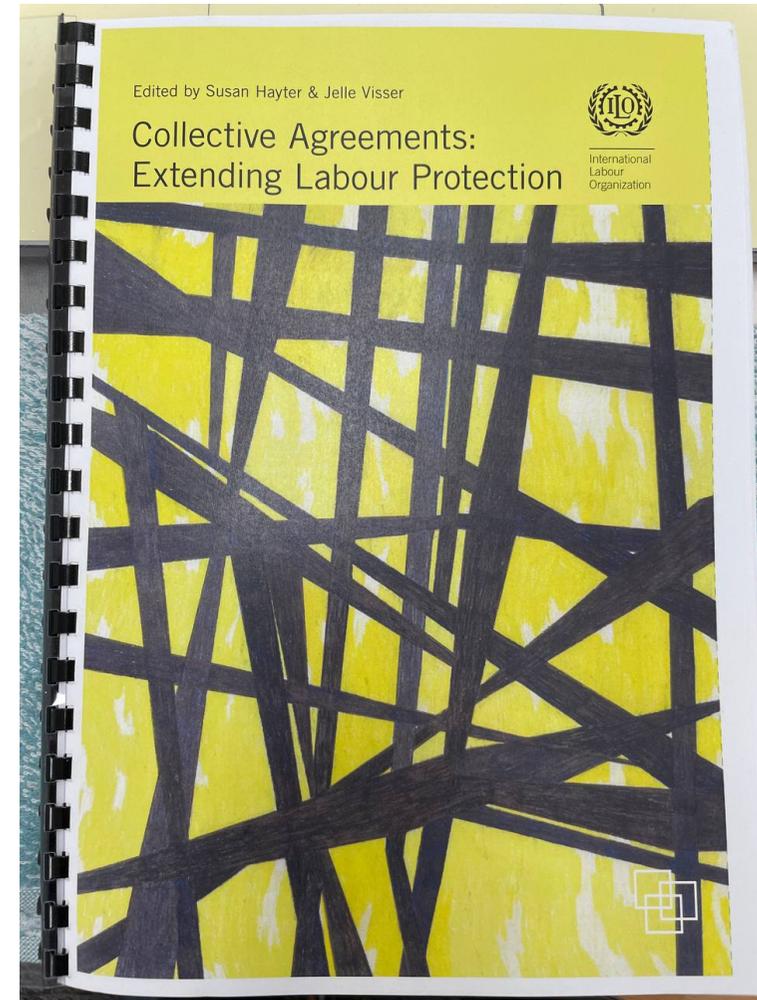
- **Collective Agreements: Extending Labour Protection, Susan Hayter & Jelle Visser(ed.), ILO(2018)**

# 서문

## ○ 공공정책으로서 단체협약 확장 제도

- ✓ 불안정노동, 이주노동 증가와 기업 지배구조 다각화로 인해 단체교섭에서 배제되는 취약 노동자 보호 목적
- ✓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에 대응하는 목적

“단체협약 확장 제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고, 노동조건 보호 제도의 수용성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수단”



# 1. 사례의 단체협약 확장제도 특징

## A. 복수사용자 교섭 전제multi-employer bargaining

- 직종, 산업, 지역 및 전국단위 적용범위
- 사용자단체 또는 복수의 사용자들 참여
-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 : 직종, 산업, 지역 및 전국 조직

## B. 단일사용자 교섭을 전제하는 기업단위 단체협약의 확장과 구별

- 단일사용자의 비조합원 노동자를 단체협약 적용범위로 하는 제도 가능. 그 자체는 단체협약의 확장 제도는 아님. (예: 미국의 교섭대표제도)

# 노사자치의 사회적 확장 또는 정책적 실현

## - 법률이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한 방식: 절차규제

A. 법률은 단체협약 확장의 주체와 범위 등의 절차요건만 정하고 실제적인 노동조건 내용은 복수사용자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간접규율

- “규제된 자치regulated autonomy”

B. 실제적 규제 방식 대비 단체협약 확장 제도의 특성

- 정당성: 다수의 단체교섭 당사자 참여와 논의 따른 합의

- 적응성: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기술변화에 신속한 대응 가능

- 구체성: 해당 직종, 산업, 지역의 특정한 조건 반영 가능

## 2. 단체협약 확장 제도의 역사

### ILO 제98호 협약과 제91호 단체협약 권고

#### A. 독일과 오스트리아 (1918; 1919); 남아프리카공화국(1924)

- 1930-40년대: 프랑스, 벨기에, 네덜란드, 브라질, 캐나다(일부), 멕시코, 일본 등 23개국 (\*영국은 면방직 산업만)
- 1950년대: 이스라엘, 아르헨티나 및 기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

#### B. ILO 제98호 협약(1949) - 당사국 의무

-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으로 고용관계의 내용과 조건을 규율 하려는 목적의 임의적인 교섭 절차를
- 충분히 발달시키거나 활용할 수 있게 촉진하는 적절한 조치

## 제91호 단체협약 권고(1951) - 단체협약 확장

1. 적정한 경우에, 확립된 단체교섭 관행을 고려하여, 국내 법령으로 정하여,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의 적용을 그 협약의 산업적,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확장하는 조치를 각 국가의 조건에 적합하게 채택되어야 한다.
2. 국내 법령은, 특히,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단체협약 확장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.
  - 해당 단체협약이 이미 많은 사용자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,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에 따라, 충분한 대표성이 있을 것.
  - 일반적으로, 단체협약의 확장 신청은 협약 당사자인 하나 이상의 노동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할 것.
  - 단체협약 확장에 앞서, 확장에 따라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.

### 3. 단체협약 확장제도 요건과 유형

A. 요건: 개시절차, 결정기관, 대표성 정도, 공익(public interest) 원리

B. 유형

○ (준)당연확장semi-automatic extension

-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확장이 당연 인정되거나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행정기관이 협약 확장을 개시하거나 적용하는 유형

○ 보충확장supportive extension

- 교섭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위원회가 협약 확장을 결정하는 유형

○ 엄격확장restrictive extension

- 교섭당사자 신청, 행정기관 또는 위원회의 결정은 보충확장과 같지만 교섭당사자의 대표성 요건을 더 강하게 정하는 유형

## - (준)당연확장 제도 특징

### 대표성과 공익원리

	대표성 정도	공익 원리
아르헨티나	노동조합이 협약대상 노동자의 20% 이상 대표	의회의 예산승인 조건
오스트리아	전체 노동자 중에서 협약적용 노동자가 50% 이상	(*사용자단체 강제가입)
브라질	확장 협약의 영향을 받는 전체 노동자와 사용자 75% 이상의 승인	공익 판단
핀란드	전체 노동자 중에서 협약적용 노동자가 50% 이상	
프랑스	노동조합이 협약대상 노동자의 30% 이상 대표	
스페인	교섭당사자가 협약 적용대상 노동자의 50% 이상 대표	

# - 보충확장 제도 특징

## 대표성과 공익원리

	대표성 정도	공익 원리
벨기에	교섭당사자의 대표성 요구 (*구체적 기준은 명시하지 않음)	
크로아티아	교섭당사자의 최대 대표성 요구(*구체적 기준은 명시하지 않음)	공익 판단
독일	협약 적용대상 노동자의 50% 이상 →(2015)'우선적인 중요성'	공익 판단
네덜란드	사용자단체가 적용대상 노동자의 60%이상 포괄 (*예외적으로 55%-공익 여부)	보편적 이익general interest
포르투갈	사용자단체가 적용대상 노동자의 50% 이상 포괄 *중소기업 다수 부문은 30% 이상(2014년) 포괄 *중소기업이 배제되는 협약확장은 인정 안됨	공익 판단(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 고려)
슬로베니아	사용자단체가 적용대상 노동자의 50% 이상 포괄	
남아프리카	협약당사자의 '충분한 대표성' 요건 *비정규고용 비율이 높은 부문은 완화 (협약 확장의 부인이 단체교섭 제도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)	
스위스	사용자단체가 적용대상 기업과 노동자의 50% 이상 포괄 *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수준에 따라서 노동자 비율 요건 완화	공익 판단

# - 엄격확장 제도 특징

## 대표성과 공익원리

	대표성 정도	공익 원리
체코	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적용대상 노동자의 '최대다수' 대표	
헝가리	사용자단체가 적용대상 노동자의 50% 이상 포괄	
아일랜드	(구체적 기준 명시 안함)	경쟁력 고려
이스라엘	해당 부문에서 단체협약의 중요성; 그 적용범위의 유의미성; 노동조합의 최대 대표성 (구체적 기준 명시 안함)	
라트비아	전체 노동자 중에서 협약 적용대상 노동자가 60% 이상	
노르웨이	이주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은 부문만 확장 인정	(*노르웨이 노동자 포함 불가)
루마니아	사용자단체가 적용대상 노동자의 50% 이상 포괄	

## □ 단체협약 확장에서 공익성 판단

### A. 공익성 요건 적용 유형

- 독일(공익 또는 사회비상 사태), 포르투갈(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), 아르헨티나(정부 예산), 네덜란드 및 스위스(보편적 이익에 부합)

### B. 판단기관

- 행정기관, 행정위원회(노사정 또는 노사 대표), 법원

### C. 쟁점

-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의한 노사자치 제약 가능성; 정치적 이용 가능성 - 공익성 요건은 사전에 특정 필요
- 해당 직종, 산업, 지역 또는 부문의 고용 전망 고려 여부
- 직업훈련, 퇴직, 의료 등 연금제도의 기여금 부담의무 규정의 확장 가능성 여부

## 4. 확장 협약의 분쟁 조정

### - 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확장 여부

A. 대부분 국가는 계약법리에 기초하여 협약당사자 사이 권리와 의무를 정한 목적의 단체협약 조항(이른바 채무적 부분)은 제외 - 네덜란드, 스위스, 북유럽 국가들

- 재판 이외의 분쟁조정 절차 활용(알선 및 조정mediation)
-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 가입 강제 효과는 부인; 사용자단체 구성원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에 따른 차별 금지

B. 공법(public laws)에 의한 규율

- 협약준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의무(독일); 노동조합이 체불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 가능(노동법원) -프랑스, 벨기에, 룩셈부르크
- 이주노동자 지위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(벌칙 적용)(독일)
- 안전과 보건, 최저임금, 하도급 및 위장 고용관계 통제 의무는 확장
  - 확장 협약에 따른 의무를 하도급 사업자에게 공지할 의무; 협약 준수를 감독할 의무

# 5. 한국에 시사점

## 초기업 단위 복수사용자 교섭체제의 지지

### A. 복수사용자 교섭과 단체협약 확장 제도 사이 높은 상관관계

- 복수사용자 교섭 비중이 높을 수록 단체협약 확장 제도의 실효성 높음.  
(\*노조 조직율과 협약 적용범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)
- 단일사용자 교섭(기업단위)이 지배적이면 단체협약 확장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. (\*노조 조직율과 협약 적용범위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음)

### B. 단체교섭의 포용성 확대(\*노동조합의 외연 확장 결과)

-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- 복수사용자 교섭 - 집중되고 조정된 단체협약  
→ 미조직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

## 단체협약 확장 제도의 요건과 효과

### A. 단체협약 확장의 대표성 요건 완화

- 특정한 정량 기준 외에 공익성(또는 그 직종, 산업, 지역의 특수한 상황 등)을 고려 -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해석 여지

### B. 중소·영세사업자 집중 제품시장에서 노동비용 경쟁 방지

- 단체교섭 적용범위가 높을 수록 저임금 고용형태 축소

### C. 노동시장에서 임금불평등 완화

-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확장 제도가 결합한 ‘단체교섭의 확장력’
- 단체교섭 적용범위(복수사용자 교섭)가 높을 수록 임금불평등 정도가 낮음